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사유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 및 건설사업관리계획
적정성 심의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기술제안입찰의 심의의결, 반
영 등의 세부 사항 마련 및 특정공법 심의 절차 및 내용 등을 개선하기 위
함

2. 주요 내용

-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사항 마련(안 제5조제2항, 제26조의2)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 시 적정성 심의받도록
근거 조항 신설
- 건설사업관리계획 적정성 심의사항 마련(안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26조의3, 별지 제2호의2서식)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적정성 심의받도록 근거 조항 마련
- 특정공법 심의 운영규정 개정(안 별표 7, 별지 제5호 서식)
 -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후보

공법, 위원 선정 및 평가항목 등에 사항을 반영하여 특정공법을 선정하도록 개정함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및 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의 : 생략

-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법률 안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를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기술자문위원회"로, "관하여"를 "관한"으로 한다.

제2조 중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 "영", "시행규칙"을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 '영', '시행규칙'로, "영 제19조"를 "영(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로, "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대하여"를 "대해"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자문"이란 건설공사의 안전 및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용역 성과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설계도서 등의 관계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위원회 위원이 서면으로 발주청에 제시한 의견을 말한다.
2.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직접 시행하는 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BPA), 울산항만공사(UPA) 등을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설계 등 용역사업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법령 등에 따라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발주부서[부산항건설사무소, 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BPA), 울산항만공사(UPA) 등], 또는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의 관리부서를 말한다.
4. "위원회 주관부서"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를 말한다.
5. "입찰안내서 심의"란 사업부서의 장이 대안입찰,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 기술제안입찰 등으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작성한 입찰안내서(안)를 위원회에서 발주 전에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6. "특정공법"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특정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해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7. "특정자재"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특정한 기업이 다른 경쟁사를 배제해 물건,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19조 제2항"을 "영 제1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을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한"을 "관련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안을 심의한다"를 "사안에 대해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를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입찰안내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의 기술자평가서·기술제안서"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기술인평가서·기술제안서"로, "입찰안내서"를 "입찰공고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심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제5항"을 "심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으로, "대하여"를 "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심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 제2항"을 "심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2항"으로, "100억원"을 "100억 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 제8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심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를 "심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심의:"를 "심의:"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로, "세부평가기준"을 "세부평가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으로 하

고, 같은 항 제12호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으로, "대체될"을 "대신할"로, "대하여"를 "대해"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6호(중전의 제14호) 중 "관하여"를 "관해"로, "사항 및 「국가계약법」"을 "사항 및 국가계약법"으로, "기술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14.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5.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
사로써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술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산항
건설사무소장"을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 제1항"을 "영 제19조제1항"으로, "자를"을 "사람을"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급"을 "3급"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다만, 3급 기술 직렬 직원의 경우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

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관련하여"를 "관련해"로 하며, 같은 호 및 제9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려하여"를 "고려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하되 위원장의 위촉으로 연임"을 "연임"으로, "잔임기간으"를 "남은 임기"로 한다.

6.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6조제6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때에는"을 "경우에는 다른 발주청 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을 "위원회 구성"으로, "영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개별적 또는 관계기관(국가기관, 자치단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 장의 추천"을 "사람을 대상으로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kpcs.portcals.go.kr>)을 통해 개별적"으로, "심사하여"를 "심사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국가기관, 자치단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의 장을 통해 추천으로 접수받을 수 있다.

제6조의2제2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관하여"를 "관한"으로, "약속해서는 아니된다"를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하여"를 "관련해"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받고자"를 "받으려는"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설기술 자문(심의) 요청서에 관계도서를 첨부하여"를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자문(심의)요청서에 관계도서 또는 설명서 등을 첨부해"로, "장에게 자문(심의)를 요청하여야"를 "장에 자문(심의)등을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착수한"을 "시작한"으로, "작성하여"를 "작성해"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고려하여 5인"을 "고려해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참여하여야"를 "참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선정하여"를 "선정해"로, "명시한 회의 개최계획"을 "명확히 기록한 회의 개최 계획"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배포하여야"를 "배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서면으로 회의

소집을 대체"를 "서면 회의로 갈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하야야 하며"를 "해야 하며"로, "적합성 여부를"을 "적합성을"로, "선정하야야"를 "선정해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소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항은 안전별 소위원회 또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사항에 대해 안전별 소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5인 이상 20인"을 "소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으로, "증·감 할"을 "증감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또는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대하야"를 "대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관하야"를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피"를 "회피"로, "제출하야"를 "제출해"로, "(回避)하야야"를 "(回避)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발생될"을 "발생한"으로 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하야"를 "반해"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관련하야"를 "관련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0조 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아니하야"를 "않아"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를 "학력 또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회 운영에 있어 적정한"을 "위원회를 운영할 때 적절한"으로, "사전에"를 "미리"로, "배포하여야"를 "배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대하여"를 각각 "대해"로 하고, 같은 호 중 "검토하여"를 "검토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출석하여"를 "출석해"로, "설명하여야"를 "설명해야"로, "용역업자로 하여금"을 "용역사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참석하여"를 "참석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2조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여 그"를 "해 그"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용역업자에게 서면(또는 전자메일)로 송부하여야"를 "용역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보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명하여야"를 "설명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분하여 별지 제8호"를 "구분해 별지 제8호"로, "구분하여야"를 "구분해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기재한"을 "명확히 기록한"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송부하여야"를 각각 "보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의 개최 통지서를 받은 자문 또는 심의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련 책임기술인, 건축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의안을 설명하게 해야 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제7조에 따른 심의요청서류 및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정여부"를 "제8조에 따른 심의요청서류 및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령과의 체계 적합성"으로, "제시하여야"를 "제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 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제5조 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1인"을 "1명"으로, "심의사안에 대한 가·부결 처리 여부를"을 "심의사안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출석하여 행한 것과 동일한"을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하여 의결하여야"를 "구분해 의결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미하여"를 "경미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대하여"를 "중대해"로, "대하여 과반수"를 "대해 과반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진행하여야"를 "진행해야"로 한다.

2. "조건부 채택"이란 원안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해서는 심의내용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 다만,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검토방안 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일부 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 등에 의할 수 있으며, 이는 동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③ 위원회에서 제5조제2항제15호의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해 의결해야 한다.

1. 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마련되어 건설공

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적정: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지만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기

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르지 않아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

가 있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하여"를 "구분해"로, "작성하여"를 "작성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적용 :"을 "적용:"으로, "적정하여"를 "적정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완 : 검토의견에 대하여"를 "보완: 검토의견에 대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검토 :"를 "재검토:"로, "미흡하거"를 "충분하지 않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채택"을 "채택 또는 조건부 적정"으로, "미흡하여"

를 "충분하지 않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본문 중 "채택"을 "채택 또는 조건부 적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를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해"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로, "작성하여"를 "작성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날로"를 "날"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반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날로"를 "날"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요 시"를 "필요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주관하여"를 "주관해"로, "제9조 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요하는"을 각각 "요구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을 "대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평면계획 및 종단계획,"을 "평면계획, 종단계획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장물"을 "지장물(支障物)"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자재 채택 여부"를 "자재를 채택할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공인성, 등록 여부"를 "공인성"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을 "대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적산"을 "적산(합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용역업자"를 "용역사업자"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기준""을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15 개정)"을 "(국토교

통부)"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건설관련업자"를 "건설관련 사업자"로,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적정하였는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용역업자"를 "용역사업자"로 한다.

제1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 허가가 필요하여 해당"을 "따른 허가·인가·승인"으로, "포함하여야 한다"를 "포함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부의할"을 "부칠"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의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해"로, "대한"을 "대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하여 기술자"를 "위해 기술인"으로,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하거"를 "않거"로, "인하여"를 "인한"으로,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약하여"를 "요약해"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로,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 같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해"로, "포

함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를 "포함해 자료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생산업체 포함"을 "생산업체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출근거 포함)"을 "(산출근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설계내역"을 "설계내역서"로 한다.

3. 건설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제18조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로, "관하여 이의"를 "이의"로, "기술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8조의2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로, "심의하여야"를 "심의해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주청장"을 "사업부서의 장"으로, "대해 접수일로"를 "대해서는 접수일"로, "개최하여"를 "개최해"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참가하고자 하는"을 "참가하려는"으로, "숙지하여야"를 "자세히 알아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적정성 :"을 "적정성:"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사전에"를 "미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설계기간 :"을 "설계기간:"으로, "비교하여"를 "비교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사기간 :"을 "공사기간:"으로, "비교하여"를 "비교해"로, "인·허가에 소요되는"을 "인가·허가에 필요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입찰참가자"를 "입찰참가업체"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필요하여"를 "필요해"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의해"를 "따라"로, "대하여"를 "대해"로, "보완하여 발주 요청하여야"를 "보완해 발주 요청해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건설기술용역 기술자평가서·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적정성 심의)"를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평가서·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적정성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52조 제7항에 따른 기술자평가서"를 "영 제52조제7항에 따른 기술인평가서"로, "참고하여 결정하고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 매뉴얼(해양수산부)"를 "참고해 결정하고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 매뉴얼」(해양수산부)"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 매뉴얼(해양수산부)"를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 매뉴얼」(해양수산부)"로, "조정하여"를 "조정해"로, "대상 여부"를 "대상 인지"로, "적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여야"를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 훈령)"을 "해양수산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수행능력"으로, "대하여 심의하여야"를 "대해 심의를 받아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기금액) 100억원"을 "부기금액

으로 한다) 100억 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미만"을 "원 미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조정에 있어서는"을 "조정은"으로, "인하여"를 "인해"로, "대하여"를 "대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변경 시에 적정성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이 적정한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작성하여"를 "작성해"로, "심의를 요청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로, "영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중대하여"를 "중대해"로, "관하여"를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억원"을 "5억 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참여기술자"를 "참여기술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영 제75조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대하여"를 "대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날로"를 "날"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장·단점"을 "장단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는지 여

부"를 "있는지"로, "지적사항의 적정 반영 여부"를 "지적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를 "심의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하여서"를 "해서"로 한다.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설계의 설계 적격 여부에 대한"을 "실시설계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로, "확정하여"를 "확정해"로, "의결하여야"를 "의결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적격:"을 "적격:"으로, "75점"을 "75점으로 한다"로, "의결을 말한다"를 "의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적격:"을 "부적격:"으로, "중대하여"를 "중대해"로,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75점) 미만인 설계를 설계 부적격으로 본다"를 "75점으로 한다)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함에 있어서"를 "할 때는"으로, "대하여"를 "대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입찰 참가업체로"를 "입찰 참가업체에게"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기술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활용 운영지침""을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활용 업무처리지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신청한다"를 "요청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신청"을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대공"을 "부대공사(주요 공사에 곁들여 하는 공사)"로, "1억원"을 "1억 원"으로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①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입찰 공고하려는 경우
2.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부서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입찰공고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며, 제1항제1호의 건설공사 중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 대상인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업체에게 실시설계서에 포함해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26조의3(건설사업관리계획 적정성 심의) ① 사업부서는 법 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2.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사업부서의 장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에 관한 사항
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에 관한 사항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 범위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적절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심의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사업부서에는 심의 결과 부적정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정·보완해 다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영 제73조 제2항"을 "영 제73조제2항"으로, "대하여"를 "대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작성하여"를 "작성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용역업자, 건설업자"를 "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현장시공실태 점검 및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시 자문 등 지적사항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미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완 등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제29조제1항 중 "미흡한"을 "부족한"으로, "재보완 하도록"을 "보완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작성하고 관리하여야"를 "작성·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를 "대해 평가단을 구성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한 기술자문 연보를 발간하여"를 "대해 기술자문연보를 발간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 필요시 전산화하여"를 "대해 필요시 전산화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위하여"를 "위해"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안하여"를 "고려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30조 중 "대하여"를 "대해"로,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범위 내"를 "범위"로, "장이 별표 6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를 "장은 별표 6을 참고해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관련하여"를 "관련해"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부서가 부담한다.

제32조 부칙 외의 부분 중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

소장은 이 규정에 대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1월 1일"로, "검토하여"를 "검토해"로, "하여야"를 "해야"
로 한다.